

각종규정 제개정(안)

| No | 규정명 | 사유 |
|----|-----------------------|--|
| 1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 - 피해자 진술권 및 의무보장, 성폭력 범죄 등 징계기준 강화 |
| 2 |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안) | - 지도자·전담팀·선수 선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 3 | 경기인등록 규정 개정(안) | - 각종 체육계 폭력사건에 따른 규정 강화 및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한조치 강화 |
| 4 | 각종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 - 각종위원회 직무의 명확화 |
| 5 | 스포츠클라이밍 경기규정 개정(안) | - 국제연맹(IFSC, UIAA) 경기규정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준용, 해석 오류 수정 및 최신 규정 업데이트 |
| 6 | 아이스클라이밍 경기규정 전부개정(안) | |
| 7 | | |
| 8 | | |
| 9 | 체육인 인권보호 규정 개정(안) | - 대한체육회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기능 이관 |
| 10 | 사무처 규정 개정(안) | -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 11 | 제무·회계 및 계약 규정 개정(안) | - 관련 상위규정 및 지침 준용 및 투명성,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
| 12 | 생활체육 심판 규정 제정(안) | - 생활체육 심판 규정 제정을 통한 위원회 업무 명확화 |
| 13 | 생활체육 대회 규정 제정(안) | - 생활체육 대회 규정 제정을 통한 원활한 대회 운영 및 규정화 |
| 14 |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제정(안) | -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따른 내규 제정 |
| 15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 -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따른 지침 제정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제3조(기능)</p> <p>1.~5. “생략”</p> <p>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징계 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의 결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p> <p>가. <u>체육회 및 관계단체</u>의 임원</p> <p>나.~다. “생략”</p> <p>7. “생략”</p> <p>8. <u>전국규모연맹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이하 “임원심의” 라 한다)</u></p> <p>9.~10. “생략”</p> <p>11.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에 요구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제3조(기능)</p> <p>1.~5. “현행과 같음”</p> <p>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징계 중인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의 결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p> <p>가. <u>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u>의 임원</p> <p>나.~다.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8. <u>제17조의 임원 심의 및 재심의 <개정 26.00.00.></u></p> <p>9.~10. “현행과 같음”</p> <p>11. <u>주무 정부부처(이하 ‘주무부처’라 함)장관이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에 요구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6.00.00.></u></p> <p>12. <u>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에 요구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6.00.00.></u></p> | <p>■ 조항 간 중복되는 내용 삭제 및 제17조 내용 준용</p> <p>■ 체육단체 운영 공정성 강화</p> |
| <p>제4조(구성)</p> <p>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u></p> <p>1.~4. “생략”</p> | <p>제4조(구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체육회와 협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계기관 및 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선임하고, 기관별 추천인원은 체육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6.00.00.></u></p> <p>1.~4. “현행과 같음 ”</p> | <p>■ 추천위원회의 투명성 강화</p> |
| <p>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p> | <p>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p>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연맹 산하 전국규모연맹체는 정관 <u>55조의2</u>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 <p>연맹 산하 전국규모연맹체 <u>및 시도 회원단체</u>는 정관 <u>5조 및 5조의2</u>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p> | <p>■ 시도회원단체 및 관련 규정 추가</p> |
| <p>제23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연맹체위원회” 라 한다)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p> | <p>제23조(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전국규모연맹체 <u>및 시도회원단체</u>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연맹체위원회” 라 한다)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p> | <p>■ 시도회원단체 추가</p> |
| <p>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p> <p>①~⑥ “생략”</p> <p>⑦ 시도회원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u>시도회원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시도회원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체육회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u>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시도회원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p> <p>1. 연맹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p> <p>⑧~⑨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p> <p>①~⑥ “현행과 같음”</p> <p>⑦ <u>연맹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연맹 위원회가, 시·군·구체육회 및 시도회원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시·도 위원회가 관할한다.</u> 해당 시도회원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시도회원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체육회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시도회원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개정 26.00.00.></p> <p>1. 연맹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p> <p>⑧~⑨ “현행과 같음”</p> <p>⑩ <u>징계기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의 신고가 있거나 그 징계사유를 인지한 경우, 즉시 징계혐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고, 이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의 심리상담·조언·치료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u></p> | <p>■ 임원징계관할권 상향 명시</p> <p>■ 성인이 미성년자 선수 대상으로 폭력 및 성적인가해 행위 시 징계기준 상향 조정</p> <p>■ 피해자 권익 및 2차피</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제25조의 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u>3년(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의 경우에는 5년)</u>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하며, 이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 요구기관의 사건 신고·접수일이 <u>된다.</u></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u>26.00.00.></u></p> <p>제25조의 2(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u>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하며, 이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 요구기관의 사건 신고·접수일을 <u>그날로 본다.<개정 26.00.00.></u></p> <p><u>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p> <p style="padding-left: 20px;"><u>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u></p> <p><u>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 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년</u></p> <p><u>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년</u></p> <p>② “<u>현행과 같음</u>”</p> <p>③ 제1항 제1호 및 별표 1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징계시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신설 26.00.00.></p> <p>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의 절차 등 절차상의 흠, 징계양정의 부당 이유로 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p> | <p>해 보호</p> <p>■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등 반영</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u>에는 제1항의 징계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6.00.00.></u></p> <p><u>⑤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법원에서 형사재판 중인 사건으로서 제24조의 우선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여 제1항의 징계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사가 종료되거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징계시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신설 26.00.00.></u></p> | |
| <p>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⑦ “생략”</p> | <p>제29조(출석요구) ① 위원회(징계 심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3항, 제7항에서도 같다)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6.00.00.></p> <p>②~⑦ “현행과 같음”</p> | <p>■ 징계소위원회 관계인 출석요구 및 심문권한 부여 검토</p> |
| <p>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제30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징계 심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6.00.00.></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④ 위원회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u></p> | <p>■ 징계소위원회 관계인 출석요구 및 심문권한 부여 검토</p> <p>■ 피해자 진술권 강화</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 <p>여야 한다. 피해자는 구술 또는 서면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및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6.00.00.></p> <p>⑤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 |
| <p>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③항 “생략” <u><신설></u></p> | <p>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③항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성인인 혐의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7호(그 중 폭행 또는 집단폭행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징계기준 중 자격정지나 출전정지의 장기 또는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신설 26.00.00.></p> <p>⑤ “현행 ④와 같음” ⑥ “현행 ⑤와 같음”</p> | <p>■ 징계기준 상향 조정</p> |
| <p><u><신설></u></p> | <p>제35조의2(<u>훈련 및 대회 중 폭력·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회 참여 허용 절차</u>) ①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가 훈련 및 대회 중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피해자로부터 접수받은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혐의자는 신고 접수 시점부터 연맹체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훈련 및 대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는 이와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6.00.00.></p> <p>② 해당 단체는 신고접수 직후 즉시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6.00.00.></p> | <p>■ 대회 전, 훈련 중 폭력·성폭력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조항 신설</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p>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때 지방 및 해외전지훈련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해당 단체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6.00.00.></p> <p>④ 소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훈련 및 대회 참여금지의 계속 유지나 해제와 같은 임시조치에 한한다.<신설 26.00.00.></p> <p>⑤ 다만, 대회 48시간 전부터 대회기간까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 금지 여부는 결정된다. 이후 최종 협의가 인정되어 관련 징계가 내려질 경우, 개인의 경기 결과는 자동으로 실효되고, 메달과 점수, 상금의 몰수 등의 결과 조치가 부과되며, 경기대회 주관단체는 해당 경기대회의 단체 종목에 대해 상기 결과조치보다 더 엄격하게 부과하는 대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6.00.00.></p> <p>⑥ 소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훈련 및 대회 참여금지가 유지될 경우,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훈련 및 대회 참여금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절차 중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신설 26.00.00.></p> <p>⑦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협이자 및 피해자</p>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p><u>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6.00.00.></u></p> <p><u>⑧ 연맹체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협이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6.00.00.></u></p> | |
| <p>제36조(징계의 효력 등)</p> <p>①~③ “생략”</p> <p>④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p> <p>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u>체육회 및 관계단체</u>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p> <p>2.~3. “생략”</p> | <p>제36조(징계의 효력 등)</p> <p>①~③ “<u>현행과 같음</u>”</p> <p>④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p> <p>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u>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u>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p> <p>2.~3. “<u>현행과 같음</u>”</p> | |
| <p>제44조(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p> <p>①~② “생략”</p> <p>③ <u>체육회 및 관계단체</u>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 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 <p>제44조(신고·증언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p> <p>①~② “<u>현행과 같음</u>”</p> <p>③ <u>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u>는 신고자 또는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등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신고자 또는 증인을 위하여 징계 처리와 관련된 절차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助力)을 할 수 있다.</p> <p>④ “<u>현행과 같음</u>”</p> | |
| <p>부 칙(2025. 07. 04)</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u>종목위원회 및 시·도위원회</u>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p> | <p>부 칙(2025. 07. 04)</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u>연맹체위원회</u>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p>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신설></p>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6. 00. 00.)</p> <p><u>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5조제7항은 2026. 6. 1.부터 시행한다.</u></p> | <p>■ 임원징계관할권 상향 개정 시행일 조정에 따름</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p> <p>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p> <table border="1" data-bbox="137 622 675 819">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0%;">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td> <td style="width: 50%;"><u>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u></td> </tr> </tbody> </table> <p>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p> <table border="1" data-bbox="137 936 675 1104">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0%;">⑥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td> <td style="width: 50%;"><u>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u></td> </tr> </tbody> </table> <p>3.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생략”</p> <p>4. 승부조작, 편파판정 “생략”</p> <p>5. 체육 관련 입학비리 “생략”</p> <p>6. 폭력</p> <table border="1" data-bbox="137 1473 675 1641">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0%;">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td> <td style="width: 50%;"><u>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u></td> </tr> </tbody> </table> <p>7. 성폭력 “생략”</p> <p>8. 성추행</p> <table border="1" data-bbox="137 1832 675 2000">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0%;">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td> <td style="width: 50%;"><u>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u></td> </tr> </tbody> </table> | 징계기준 | |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 <u>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u> | 징계기준 | | ⑥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 <u>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u> | 징계기준 | |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u>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u> | 징계기준 | |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u>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u> | <p>[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p> <p>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p> <table border="1" data-bbox="703 622 1238 819">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0%;">“현행과 같음”</td> <td style="width: 50%;">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강등, 감봉, 견책</u></td> </tr> </tbody> </table> <p>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p> <table border="1" data-bbox="703 936 1238 1115">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0%;">“현행과 같음”</td> <td style="width: 50%;">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강등, 감봉, 견책</u></td> </tr> </tbody> </table> <p>3.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현행과 같음”</p> <p>4. 승부조작, 편파판정 “현행과 같음”</p> <p>5. 체육 관련 입학비리 “현행과 같음”</p> <p>6. 폭력</p> <table border="1" data-bbox="703 1473 1238 1664">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0%;">“현행과 같음”</td> <td style="width: 50%;">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 견책</u></td> </tr> </tbody> </table> <p>7. 성폭력 “현행과 같음”</p> <p>8. 성추행</p> <table border="1" data-bbox="703 1832 1238 2022">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0%;">“현행과 같음”</td> <td style="width: 50%;">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 견책</u></td> </tr> </tbody> </table> | 징계기준 | | “현행과 같음”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강등, 감봉, 견책</u> | 징계기준 | | “현행과 같음”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강등, 감봉, 견책</u> | 징계기준 | | “현행과 같음”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 견책</u> | 징계기준 | | “현행과 같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 견책</u> | <p>■ 경징계 명시</p>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 <u>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 <u>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u>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u>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강등, 감봉, 견책</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강등, 감봉, 견책</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 견책</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 견책</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 | | | | | | | | | | | |
|---|---|--------------------------|---|---|--|-------------------------|---------------------|-----------------------|--|------|--|--|------------------------|-----------------------------------|--------------------------|---------------------|-------------------------|---|
| <p>9. 성희롱</p> <table border="1" data-bbox="140 282 676 450"> <thead> <tr> <th colspan="2">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td> <td><u>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u></td> </tr> </tbody> </table> | 징계기준 | |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u>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u> | <p>9. 성희롱</p> <table border="1" data-bbox="707 282 1241 488"> <thead> <tr> <th colspan="2">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현행과 같음”</td> <td>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 견책</u></td> </tr> </tbody> </table> | 징계기준 | | “현행과 같음”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 견책</u>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u>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u> | | | | | | | |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 견책</u> | | | | | | | | | | | | | | | | | |
| <p>10. 인권 침해</p> <table border="1" data-bbox="140 551 676 719"> <thead> <tr> <th colspan="2">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td> <td><u>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u></td> </tr> </tbody> </table> | 징계기준 | | 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u>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u> | <p>10. 인권 침해</p> <table border="1" data-bbox="707 551 1241 757"> <thead> <tr> <th colspan="2">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현행과 같음”</td> <td>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 견책</u></td> </tr> </tbody> </table> | 징계기준 | | “현행과 같음”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 견책</u>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침해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u>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u> | | | | | | | |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 견책</u> | | | | | | | | | | | | | | | | | |
| <p>11. 괴롭힘</p> <table border="1" data-bbox="140 819 676 987"> <thead> <tr> <th colspan="2">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td> <td><u>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u></td> </tr> </tbody> </table> | 징계기준 | |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u>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u> | <p>11. 괴롭힘</p> <table border="1" data-bbox="707 819 1241 1025"> <thead> <tr> <th colspan="2">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현행과 같음”</td> <td>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 견책</u></td> </tr> </tbody> </table> | 징계기준 | | “현행과 같음” |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 견책</u>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u>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u> | | | | | | | |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 견책</u> | | | | | | | | | | | | | | | | | |
| <p>12. 선거 관련 비위행위 “생략”</p> | <p>12. 선거 관련 비위행위 “현행과 같음”</p> | | | | | | | | | | | | | | | | | |
| <p>13.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생략”</p> | <p>13.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현행과 같음”</p> | | | | | | | | | | | | | | | | | |
| <p>14. 불법도박</p> <table border="1" data-bbox="140 1290 676 1458"> <thead> <tr> <th colspan="2">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td> <td><u>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u></td> </tr> </tbody> </table> | 징계기준 | | 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u>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u> | <p>14. 불법도박</p> <table border="1" data-bbox="707 1290 1241 1496"> <thead> <tr> <th colspan="2">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현행과 같음”</td> <td>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u>, 강등</td> </tr> </tbody> </table> | 징계기준 | | “현행과 같음”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u> , 강등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불법도박 행위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 <u>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u> | | | | | | | |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현행과 같음” |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u>감봉</u> , 강등 | | | | | | | | | | | | | | | | | |
| <p>1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비위행위</p> <table border="1" data-bbox="140 1693 676 2051"> <thead> <tr> <th colspan="2">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①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td> <td>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td> </tr> <tr> <td>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td> <td>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td> </tr> <tr> <td>②과실로 인한 행위 등 경미한 경우</td> <td>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td> </tr> </tbody> </table> | 징계기준 | | ①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②과실로 인한 행위 등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 <p>15. 사회적 물의를 일으<u>키거나 차별 행위로 인해</u>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비위행위</p> <table border="1" data-bbox="707 1693 1241 2051"> <thead> <tr> <th colspan="3">징계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td> <td>①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td> <td>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td> </tr> <tr> <td>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td> <td>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td> </tr> </tbody> </table> | 징계기준 | | |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 | ①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p>■ 사회적 물의에 대한 위반행위 세분화하여 징계사유 및 양정구체화</p>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①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 | | | | | | | | | | | | | | | |
|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 | | | | | | | | | | | | | | |
| ②과실로 인한 행위 등 경미한 경우 |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 | | | | | | | | | | | | | | | | |
| 징계기준 | | | | | | | | | | | | | | | | | | |
|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 | ①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 | | | | | | | | | | | | | | | |
| |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 | | | | | | | | | | | | | | |

| 현행 | | 개정(안) | | | 개정사유 |
|----|---------------------|---|--|--|------|
| | 이하의 자격정지 감 봉, 강등 | | ② 과실로 인한 행위 등 경미 한 경우 | <u>견책</u> , 1년 이 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 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u>견책</u> | |
| | | <u>인종,</u> <u>성별,</u> <u>장애,</u> <u>종교,</u> <u>사회적</u> <u>출신,</u> <u>정치적</u> <u>또는</u> <u>기타</u> <u>의견을</u> <u>이유로</u> <u>차별</u> <u>하는</u> <u>행위</u> | ① <u>상습적인 차 별 행위로 인해 개인 또는 단체 의 중대한 사회 적·경제적 폐 해가 야기된 경우</u> | <u>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 지 또는 제명</u> | |
| | | | ①~②에 해당 하지 않는 행 위의 경우 | <u>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 지 또는 해임</u> | |
| | | | ② <u>차별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 생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경미한 경우</u> | <u>1년 이하의 출 전정지 또는 2 년 이하의 자 격정지 감봉, 강등, 견책</u>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u>는</u>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2. “국가대표 지도자” <u>는</u>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사)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에서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총 감독,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3. “국가대표 선수” <u>는</u> 체육회 또는 연맹이 국제종합경기대회(이하 “종합대회”라 한다) 또는 국제종목별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 이하 “종목별대회”라 한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경기임원” <u>은 국제대회에</u> 출전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트레이너를 말한다. 5. “<u>트레이너</u>” <u>는</u>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u>의무</u>, 체력, 기술, 심리, 영상분석 및 훈련장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7. “생략” 8. “전문스포츠지도사” <u>는</u>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u>제9조 제1항의 자격 보유자를 말한다.</u>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개정 2026.00.00.></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u>란</u>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2. “국가대표 지도자” <u>란</u>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사)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에서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총 감독, 감독, 코치로 구분한다. 3. “국가대표 선수” <u>란</u> 체육회 또는 연맹이 국제종합경기대회(이하 “종합대회”라 한다) 또는 국제종목별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 이하 “종목별대회”라 한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경기임원” <u>이란 종합대회 또는 종목별대회에</u> 출전하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u>전담팀의 팀원으로 구성된 전문인력</u>을 말한다. 5. “<u>전담팀</u>” <u>이란</u>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u>의료, 컨디셔닝, 체력, 기술, 심리, 영상분석 및 훈련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u>을 말하며, <u>의료 면허 소지자와 트레이너로 구분한다.</u> 6.~7. “현행과 같음” 8. “전문스포츠지도사” <u>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u> 9. “<u>생활스포츠지도사</u>” <u>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말</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 전담팀을 의료 면허 소지자 및 트레이너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정비 ■ 관련 법령 조항 수정 ■ 생활체육지도사 정의 추가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9. “강화훈련”은 연맹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자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촌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p> | <p><u>한다.</u> 10. “강화훈련”이란 회원종목단체에서 선발한 선수 및 지도자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촌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 이동 및 자구수정 |
| <p>제4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u>트레이너</u>의 선발 절차) ①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 <u>선발 일정</u> 등 세부사항을 <u>정하여</u> 국가대표 <u>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며, 국가대표 지도자 후보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여</u> 이사회에 추천한다. 연맹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②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u>트레이너</u>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u>정하여 트레이너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며, 트레이너 후보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여</u> 연맹의 장에게 추천한다. 연맹의 장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u>트레이너</u>를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p> <p>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u>트레이너</u>를 외국인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u>공개 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u></p> | <p>제4조(국가대표 지도자 및 <u>전담팀</u>의 선발 절차) ①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u>선발 자격</u>, 선발 일정, <u>평가 방식, 전형별 평가위원 구성</u> 등 세부사항을 <u>정한후</u> 국가대표 <u>지도자 선발 공고</u>를 1개월 이상 실시한다. <u>경기력향상위원회는 공고에 따라 접수된</u> 국가대표 지도자 후보자를 <u>평가·심의하여</u> 이사회에 추천한다. 연맹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 국가대표 지도자를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와 사전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p> <p>②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u>전담팀의 선발 자격</u>, 선발 일정, <u>평가 방식, 전형별 평가위원 구성</u> 등 세부사항을 <u>정한 후, 국가대표 전담팀 선발 공고</u>를 1개월 이상 실시한다. <u>경기력향상위원회는 공고에 따라 접수된 국가대표 전담팀 후보자를 평가·심의하여</u> 연맹의 장에게 추천한다. 연맹의 장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u>국가대표 전담팀</u>을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u>체육회와 사전협의 후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u> <개정 2026.00.00.></p> <p>③ 국가대표 지도자 및 <u>전담팀</u>을 외국인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u>공개경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세부 선발 자격 수립, 선발 일정의 사전 공고, 후보자 평가·심의, 체육회 승인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한다.</u> <개정 2026.00.00.></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 절차 명확화 ■ 지도자와 동일하게 공고기간 단축 예외조항 추가 ■ 선발 절차 명확화 ■ 명확화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u><신설></u></p> <p><u><신설></u></p> | <p><u>④ 연맹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 고시 등에 따라 연맹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경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정부 부처의 채용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u></p> <p><u>⑤ 연맹은 국가대표로서 요구되는 윤리성을 지닌 지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26.00.00.></u></p> <p><u>1. 선수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여부</u></p> <p><u>2. 과거 지도 활동 중 인권침해 여부 및 징계처분 이력</u></p> <p><u>3. 선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여 실적 등</u></p> | <p>■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따른 채용 절차 근거 마련</p> <p>■ 국가대표 지도자로서의 윤리성을 지닌 자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기준 수립, 적용 의무화</p> |
| <p><u><신설></u></p> | <p><u>제4조의2(회원종목단체 자체 국가대표 운영) 연맹이 종목별 대회 참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00.00.]</u></p> | <p>■ 종목단체 자체 국가대표 선발 절차 명시</p> |
| <p>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p> <p>①~③ “생략”</p> <p>④ 해당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p> <p>1.~2. “생략”</p> <p>3. 해당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목의 법인 단체가 발행한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으나 지도경력은 감독은 5년 이상 코치는 2년 이상으로 한다.</p> | <p>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해당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6.00.00.></p> <p>1. ~ 2. “현행과 같음”</p> <p>3. 해당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제9조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정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목의 법인 단체가 발행한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으나 지도경력은 감독은 5년 이상 코치는</p> | <p>■ 표기 규칙 준수</p> <p>■ 관련 법률 조항 반영</p> <p>■ 표기 규칙 준수</p> <p>■ 관련 법률 조항 반영</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4. <u>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또는 해당종목 지도경력이 제2항 제5호와 제3항 제5호로 한다.</u></p> <p>⑤ <u>종목별로 국가대표 지도자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 지도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선수가 참가할 수 없는 종목 또는 최초 선발 공고 후 여성 지원자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2년 이상으로 한다.</p> <p>4. <u>삭제 <2026.00.00.></u></p> <p>⑤ <u>종목별 국가대표 지도자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의 비율이 3년 이상 연속하여 100분의 20 미만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시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정 방안에는 여성 지도자 대상 교육·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지도자 선발 공고에 따라 여성 지원자가 없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여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u></p> <p>⑥ <u>제2조제7호에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연맹이 인정한 민간체육시설 지도경력 또는 해외 지도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철인3종, 근대5종 등 복합종목의 경우 세부 종목 전문 지도자의 자격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6.00.00.></u></p> <p>⑦ <u>국가대표 지도자는 종합대회 및 종목별 대회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종목 국제연맹(IF)이 요구하는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6.00.00.></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되는 조항 정비 ■ 성별 균형 및 여성 참여 확대의 제도적 기반 강화 ■ 민간체육시설 및 해외 지도경력 자격 인정 근거 ■ 복합 종목의 전문 지도자 자격 승인 근거 ■ 국제연맹에서 요구하는 지도자 자격증 취득 의무화 |
|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u>제5조의2(국가대표 지도자의 계약기간)</u> <u>국가대표 지도자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목 특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0.00.]</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의 계약기간 명문화 |
|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u>제5조의3(국가대표 지도자의 재임용)</u> <u>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최초 임용기간 만료 후 종합대회 또는 종목별대회의</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 재임용 절차 명문화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p>주기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용 될 수 있다.</p> <p>② 재임용은 지도역량, 올림픽 등 종합대회와 종목별대회에서의 성과, 인성 및 품행, 선수 관리능력, 공정성 및 윤리성 등 국가대표 지도자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p> <p>③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국가대표 지도자의 재임용에 관한 평가·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추천된 재임용 후보자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재임용을 확정한다.</p> <p>④ 재임용의 경우에 한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재임용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6.00.00.]</p> | |
| <p>제6조(국가대표 <u>트레이너</u> 자격) ① <u>트레이너</u>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p> | <p>제6조(국가대표 <u>전담팀</u>의 자격) ① <u>의료</u> 면허 소지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6.00.00.></p> <p>② <u>트레이너</u>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연맹이 인정하는 분야별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갖춘 자로 하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를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6.00.00.></p> | <p>■ 전담팀(의료 면허 소지자 및 트레이너) 자격 요건 명확화</p> |
| <p>제7조(경기임원의 선발 절차) ① 올림픽 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기임원은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u>트레이너</u> 중에서</p> | <p>제7조(경기임원의 선발 절차) ① 올림픽 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기임원은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u>전담팀</u> 중에서 회</p> | <p>■ 용어정리</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추천하면 체육회에서 확정한다.</p> <p>②~⑦ “생략”</p> | <p>원종목단체의 장이 추천하면 체육회에서 확정한다. <개정 2026.00.00.></p> <p>②~⑦ “현행과 같음”</p> | |
| <p>제8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p> <p>①~⑤ “생략”</p> <p>⑥ 단체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은 객관적인 경기력 지표를 기준으로 선발하되, 제1항과 달리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서 정한바가 없을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u>추천을 받아</u> 선발할 수 있다.</p> <p>⑦~⑩ “생략”</p> | <p>제8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단체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은 객관적인 경기력 지표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다만, 제1항과 달리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u>연맹의</u>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로부터 <u>선발사유를 청구하고, 추천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를</u>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p> <p>⑦~⑩ “현행과 같음”</p> | <p>■ 단체 종목 선수추천 절차 명확화</p> |
| <p>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u>트레이너</u>,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p> <p>1.~12. “생략”</p> <p>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p> <p>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p><신설></p> <p><신설></p> <p>14. “생략”</p> <p><신설></p> | <p>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u>전담팀</u>,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6.00.00.></p> <p>1.~12. “현행과 같음”</p> <p>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p> <p>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p><u>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u></p> <p><u>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u></p> <p>14. “현행과 같음”</p> <p><u>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u></p> | <p>■ 용어정리</p> <p>■ 징계시효 10년 적용 대상에 성매매, 성희롱 추가</p> <p>■ 국가공무원법 및 대한체</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p><u>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6.00. 00.></u></p> <p><u>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u></p> <p><u>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u></p> | <p>육회 인사규정 개정사항 반영</p> |
| <p>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p> <p>① “생략”</p> <p>② 연맹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 <p>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연맹의 장은 <u>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체육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연맹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또는 체육회 보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대해 국가대표 훈련지원 사업 조정, 재정지원 제한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6.00. 00.></p> | <p>■ 명확화</p> <p>■ 이 의 신 청 미 이행 시 제재조치 조항 신설</p> |
|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 <p>제11조의2(선발 관련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해당 연맹의 임원 또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의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p> <p><u>1. 심의 대상자가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u></p> <p><u>2. 심의 대상자와 동일한 소속팀인 경우</u></p> <p><u>3.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u></p> <p>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p> | <p>■ 이 해 층 돌 방지를 통한 선발 절차 공정성 확보</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p><u>로 명시하여 이사회 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사회 또는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u>③ 해당 임원 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은 무효로 하며, 이사회 또는 경기력향상위원회는 해당 임원 또는 위원을 배제하고 이를 즉시 재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0.00.]</u></p> | |
| <p><u><신설></u></p> | <p><u>제11조의3(임원의 경기력향상위원회 겸직 금지) ① 대한체육회 및 연맹의 임원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은 특정 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0.00.]</u></p> | <p>■ 경기력향상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종목 단체 임원의 위원 겸직 원칙적 금지</p> |
| <p>제14조(국가대표 및 <u>트레이너</u>의 임무)</p> <p>① “생략”</p> <p><u><신설></u></p> <p>②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가대표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p> <p>2. <u>의무</u>, 체력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p> | <p>제14조(국가대표, <u>전담팀</u>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의료 면허 소지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00.00.></u></p> <p><u>1. 국가대표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u></p> <p><u>2. 의료 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u></p> <p><u>3.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u></p> <p><u>4.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u></p> <p>③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00.00.></p> <p>1. 국가대표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p> <p>2. <u>의무</u>, <u>체력</u>, <u>컨디셔닝</u>, <u>기술</u>, <u>심리</u></p> | <p>■ 의료 면허 소지자 임무 명확화</p> <p>■ 항이동</p> <p>■ 전문 분야</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p> <p>3. 영상 및 전략분석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결과 보고</p> <p>4.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p> <p>5.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p> <p>③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p> <p>2.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p> <p>3.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p> <p>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p> | <p><u>등의</u>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 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p> <p>3. 영상 및 전략분석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결과 보고</p> <p><u>4. 훈련장비 트레이너는 장비 현황 보고, 운용계획 수립 및 선수별 장비 관리</u></p> <p>5.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p> <p>6.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p> <p>④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0.00.></p> <p>1. 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p> <p>2.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p> <p>3.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p> <p>4.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p> | <p>추가</p> <p>■ 전문 분야 추가</p> |
| <p>제17조(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 ① “생략”</p> <p>② 연맹은 선발 및 운영규정에 반드시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u>선수, 지도자, 트레이너</u>의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 <p>제17조(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의 제·개정) ① “<u>현행과 같음</u>”</p> <p>② 연맹은 선발 및 운영규정에 반드시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u>국가대표, 전담팀</u>의 선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00.00.></p> <p>③~④ “<u>현행과 같음</u>”</p> | <p>■ 자구수정</p> |
| <p>제18조(국가대표 훈련의 관리) 국가대표 훈련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 ‘<u>강화훈련 운영지침</u>’으로 정하여 시행한다.</p> | <p>제18조(국가대표 훈련의 관리) ‘<u>국가대표 훈련지원</u>’ <u>사업</u>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u>강화훈련 운영지침</u>」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6.00.00.></p> | <p>■ 자구수정</p> |
| | <p><u>부 칙(2026. 00. 00.)</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u></p>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p> <p>1.~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p> <p>1.~10. “생략”</p> <p>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u>아니한 사람</u></p> | <p>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u>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 적용 <신설 2026.00.00.></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개월</p> <p style="padding-left: 20px;">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3개월</p> <p style="padding-left: 20px;">다. 학교에서의 봉사 : 5개월</p> <p style="padding-left: 20px;">라.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8개월</p> <p style="padding-left: 20px;">마. 사회봉사 : 8개월</p> <p style="padding-left: 20px;">바. 출석정지 : 10개월</p> <p style="padding-left: 20px;">사. 학급교체 : 10개월</p> <p style="padding-left: 20px;">아. 전학 : 12개월</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p> <p>1.~10. “현행과 같음”</p> <p>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u>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u></p> | <p>■ 학교폭력 학생 선수에 대한 등록 제한 명시</p> <p>■ 제한 조치 추가</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12.~14. “생략” ③ “생략” | <u>한 사람 <개정 2026.00.00.></u> 12.~1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u><신설></u> | <u>부 칙 (2026. 00. 00.)</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u>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제12조(각종위원회의 직무) 각종위원회의 소관별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1.~6. “생략”</p> <p>7. 클라이밍위원회 가.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각종 클라이밍대회의 <u>관련</u> 조직구성 및 운영</p> <p>나. <u><신설></u></p> <p>다.~타. “생략”</p> <p>8.~17. “생략”</p> | <p>제12조(각종위원회의 직무) 각종위원회의 소관별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1.~6. “생략”</p> <p>7. 클라이밍위원회 가.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각종 클라이밍대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p> <p>나. <u>각종 클라이밍대회 경기규정의 제정·개정안 입안 및 상정</u></p> <p><u>다.</u> “현행 나.와 같음”</p> <p><u>라.</u> “현행 다.와 같음”</p> <p><u>마.</u> “현행 라.와 같음”</p> <p><u>바.</u> “현행 마.와 같음”</p> <p><u>사.</u> “현행 바.와 같음”</p> <p><u>아.</u> “현행 사.와 같음”</p> <p><u>자.</u> “현행 아.와 같음”</p> <p><u>차.</u> “현행 자.와 같음”</p> <p><u>카.</u> “현행 차.와 같음”</p> <p><u>타.</u> “현행 카.와 같음”</p> <p><u>파.</u> “현행 타.와 같음”</p> <p><u>하.</u> “현행 파.와 같음”</p> <p>8.~17. “현행과 같음”</p> | <p>■ 클라이밍위원회 직무 명확화</p> |
| <p><u><신설></u></p> | <p><u>부 칙(2026.00.00.)</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u><신설></u></p> | <p>개정. 2020. 08. 18 개정. 2021. 06. 12 개정. 2022. 06. 24 개정. 2023. 06. 22 개정. 2024. 03. 20 개정. 2025. 07. 04 개정. 2026. 00. 00</p> | <p>■ 개정일 명시(스공위 권고사항)</p> |
| <p>오픈 스포츠 클래스는 IFSC 파라 스포츠 클래스 분류에 명시된 장애가 없는(또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선수 클래스를 의미한다.</p> | <p>오픈 스포츠 클래스는 <u>WORLD CLIMBING</u> 파라 스포츠 클래스 분류에 명시된 장애가 없는(또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선수 클래스를 의미한다.</p> | <p>■ 국제연맹 명칭 변경</p> |
| <p>파라 스포츠 클래스는 IFSC에 의해 일부 적격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선수 클래스를 의미한다.</p> | <p>파라 스포츠 클래스는 <u>WORLD CLIMBING</u>에 의해 일부 적격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선수 클래스를 의미한다.</p> | <p>■ 국제연맹 명칭 변경</p> |
| <p>전진 동작은 다음 홀드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단일 또는 연속적인 등반 동작으로, 다음 두 가지의 조건이 동시에 진행될 때 성립된다. a)~b) “생략”</p> | <p>전진 동작(<u>사용</u>)은 다음 홀드를 순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단일 또는 연속적인 등반 동작으로, 다음 두 가지의 조건이 동시에 진행될 때 성립된다. a)~b) “현행과 같음”</p> | <p>■ 유사 용어 정리</p> |
| <p>격리 상태는 선수가 주어진 경기 라운드에서 관련된 루트/볼더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한적인 정보란 다음과 같다. a)~c) “생략” <u><신설></u></p> | <p>격리 상태는 선수가 주어진 경기 라운드에서 관련된 루트/볼더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한적인 정보란 다음과 같다. a)~c) “현행과 같음” d) <u>격리상태에서는 어떠한 전자 통신 장비 및 모든 촬영장비를 소지 할 수 없다.</u></p> | <p>■ 각종 통신 장비 규정 정리</p> |
| <p>사용은 선수가 홀드를 통제하고 다음을 환 경우이다. 선수가 판정과 득점을 목적으로 구성물을 사용하여 (i)몸의 무게중심 또는 엉덩이의 진행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ii) 환 손 또는 양손이 다음의 진행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이다. a) 루트의 진행 방향을 따라 순차적인</p> | <p><u><삭제></u></p> | <p>■ 전진 동작 사영의 같은 의미로 삭제</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다음 손 홀드 방향</p> <p>b) 같은 홀드에서 진행 방향을 따라 다른 선수가 성공적으로 통제한 더 멀리 있는 손 홀드 방향</p> | | |
| <p><u><신설></u></p> | <p><u>등반시간은 다음을 의미한다.</u></p> <p>a) <u>선수의 시도(들)에 대해 어떤 루트/볼더에서 허용되는 최대 등반 시간</u></p> <p>b) <u>다음 사이의 경과 시간:</u></p> <p>i) <u>리드 및 볼더: 선수의 루트/볼더 시도의 시작부터 시도의 종료까지</u></p> <p>ii) <u>스피드: 해당 시도의 출발 신호부터 루트의 성공적인 완등까지의 시간</u></p> | <p>■ 국제 규정 신설에 따른 신설</p> |
| <p>안전홀드는 관련 퀵드로우를 클립하지 않고 해당 홀드를 지나가는 경우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루트에 지정된 홀드를 의미한다. 안전 홀드와 <u>그 관련</u> 퀵드로우는 루트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p> | <p>안전홀드는 관련 퀵드로우를 클립하지 않고 해당 홀드를 지나가는 경우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루트에 지정된 홀드를 의미한다. 안전 홀드와 <u>그에 관련된</u> 퀵드로우는 루트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p> | <p>■ 자구수정</p> |
| <p>온사이트는 루트나 볼더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u>그리고 사전 연습이나 시도</u> 경기를 치르는 방식을 의미한다.</p> <p>a) “생략”</p> | <p>온사이트는 루트나 볼더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경기를 치르는 방식을 의미한다.</p> <p>a) “현행과 같음”</p> | <p>■ 설명정리</p> |
| <p>부문(Category)에는 하나의 특정 스포츠 클래스, 종목, 성별 및 나이에 따른 선수그룹을 의미한다.</p> <p>“U17 “ <u>2025년도 기준 2009년, 2010년</u> 생 선수로 구성된 연령그룹이다.</p> <p>“U19 “ <u>2025년도 기준 2007년, 2008년</u> 생 선수로 구성된 연령그룹이다.</p> <p>” U21 “ <u>2025년도 기준 2005년, 2006년</u> 생 선수로 구성된 연령그룹이다.</p> <p>*U17은 17세 이하의 의미로 사용한다. 성인대회의 출전 가능 나이는 <u>2025년도 기준 2008년생을 포함, 그 이전 출생자</u>이다.</p> | <p>부문(Category)에는 하나의 특정 스포츠 클래스, 종목, 성별 및 나이에 따른 선수그룹을 의미한다.</p> <p>“U17 “ <u>2026년도 기준 2010년, 2011년</u> 생 선수로 구성된 연령그룹이다.</p> <p>“U19 “ <u>2026년도 기준 2008년, 2009년</u> 생 선수로 구성된 연령그룹이다.</p> <p>” U21 “ <u>2026년도 기준 2006년, 2007년</u> 생 선수로 구성된 연령그룹이다.</p> <p>*U17은 17세 이하의 의미로 사용한다. 성인대회의 출전 가능 나이는 <u>2026년도 기준 2009년생을 포함, 그 이전 출생자</u>이다.</p> | <p>■년도 변경에 따른 나이 정리</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제트 클립(Z-Clip)은 등반 로프로 두 개의 확보 지점을 <u>비</u>순차적으로 <u>연결</u>한 경우이다.</p> | <p>제트 클립(Z-Clip)은 등반 로프로 두 개의 확보 지점을 순차적으로 <u>연결 하지 않은</u> 경우이다.</p> | <p>■ 용어정리</p> |
| <p>2025년 이의신청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공지함.</p> | <p>2026년 이의신청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공지함.</p> | <p>■ 년도 변경</p> |
| <p>1.2 클라이밍위원회는 대한산악연맹으로부터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대회의 관련 조직 운영을 위임받은 조직이다.</p> | <p>1.2 클라이밍위원회는 대한산악연맹으로부터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대회의 관련 조직 <u>구성 및</u> 운영을 위임받은 조직이다.</p> | <p>■ 업무 명확화</p> |
| <p>1.3 국내/국제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대회 운영에 관하여 클라이밍위원회의 중요한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p> <p>A)~B) “생략”</p> <p>C) <u>IFSC</u> & UIAA와 대한산악연맹의 규정과 규칙에 부합되는 대회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p> | <p>1.3 국내/국제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대회 운영에 관하여 클라이밍위원회의 중요한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p> <p>A)~B) “현행과 같음”</p> <p>C) <u>WORLD CLIMBING</u> & UIAA와 대한산악연맹의 규정과 규칙에 부합되는 대회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p> | <p>■ 국제 연맹 명칭변경</p> |
| <p>1.6 클라이밍 경기의 조직과 관련하여 KAF (<u>위원회</u>)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A)~E) “생략”</p> <p>F) 모든 대회 결과, 코리안 순위 및 <u>볼더 리드</u> 종합 순위, 및 기타 공식 정보의 공식 간행물 발행</p> <p>G) “생략”</p> | <p>1.6 클라이밍 경기의 조직과 관련하여 KAF (<u>클라이밍위원회</u>)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p>A)~E) “현행과 같음”</p> <p>F) 모든 대회 결과, 코리안 순위 및 종합 순위, 및 기타 공식 정보의 공식 간행물 발행</p> <p>G) “현행과 같음”</p> | <p>■ 종목 명확화</p> |
| <p>1.9 KAF가 승인하는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다음과 같다.</p> <p>A)~C)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1.9 KAF가 승인하는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다음과 같다.</p> <p>A)~C) “현행과 같음”</p> <p><u>D) 대산련이 주관 주최하는 대회는 반드시 시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u>1) 리드, 볼더 경기장은 7년주기로 클라이밍위원회 또는 전문시공업체의 안전점검을 받아야한다.(2027년부터 적용)</u></p> <p style="padding-left: 20px;"><u>2) 스피드경기장은 4년주기의 스피드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u></p> | <p>■ 경기장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내용 추가</p> |
| <p>1.10 KAF는 승인한 각 대회에 공식적</p> | <p>1.10 KAF는 승인한 각 대회에 공식적</p> | <p>■ 중복 문구</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으로 아래의 임원을 임명한다.</p> <p>A)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장은 대회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모든 임원 회의를 주관한다. 이 권한은 미디어 및 주최자가 지명한 모든 사람의 활동을 포함한다.</p> <p>B) 기술 감독관 ★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KAF와 관련된 조직에 관한 문제들을 처리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선수 및 기타 사람의 등록 채점과 결과의 처리 의료, 보도 그리고 기타 시설물)가 KAF 규정을 준수하게 할 권한이 있다. 기술 감독관은 이의 심판진 구성원이며, 대회 조직위원들과 함께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으며, 대회 심판진 회의에 자문 자격으로 참석한다. 대회 임원, 각 시도 임원, 선수를 대상으로 기술 회의를 주관한다. 심판장의 부재 시 그리고 심판장이 대회장에 도착하기 전에 기술 감독관은 경기지역 내에서 대회의 조직에 관해 심판장을 대신해 활동한다. 기술 감독관은 긴급 조치의 적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예: 경기 형식의 조정) 이러한 조치들은 KAF가 별도로 명기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 감독관이 임명되지 않은 대회 또는 기술 감독관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심판장이 기술 감독관의 직무를 대신한다.</p> <p>C) 심판장 심판장은 경기지역 (즉 선수 및 그 외</p> | <p>으로 아래의 임원을 임명한다.</p> <p>A)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장은 대회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모든 임원 회의를 주관한다. 이 권한은 미디어 및 주최자가 지명한 모든 사람의 활동을 포함한다. <u>긴급조치(특별한 사항)로 대회 전체를 취소 할수있는 유일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u></p> <p>B) 기술 감독관 ★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KAF와 관련된 조직에 관한 문제들을 처리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선수 및 기타 사람의 등록 채점과 결과의 처리 의료, 보도 그리고 기타 시설물)가 KAF 규정을 준수하게 할 권한이 있다. 기술 감독관은 이의 심판진 구성원이며, 대회 조직위원들과 함께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으며, 대회 심판진 회의에 자문 자격으로 참석한다. 대회 임원, 각 시도 임원, 선수를 대상으로 기술 회의를 주관한다. 기술 감독관은 긴급 조치의 적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예: 경기 형식의 조정) 이러한 조치들은 KAF가 별도로 명기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 감독관이 임명되지 않은 대회 또는 기술 감독관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심판장이 기술 감독관의 직무를 대신한다.</p> <p>C) 심판장 심판장은 경기지역 (즉 선수 및 그 외</p> | <p>삭제 및 업무 명확화</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의 인원이 격리구역으로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등반 벽 전방의 경기구역을 떠나 경기장의 공공 지역으로 돌아가는 지점까지) 내에서 대회 판정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대회 임원, 각시도 임원, 선수를 대상으로 기술 회의를 주관한다. 심판장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장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종목심판장 심판장 업무를 대신한다. 판장은 일반적으로 판정 역할을 하지 않지만,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다른 심판위원에게 배정된 심판 업무를 할 수 있다. 심판장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KAF 대회 규칙의 적용에 대한 모든 심판위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심판장은 기술 감독관과 함께 이의 심의 심판진의 구성원이다. 심판장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장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종목심판장이 심판장 업무를 대신한다.</p> <p>E)~F) “생략”</p> | <p>의 인원이 격리구역으로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등반 벽 전방의 경기구역을 떠나 경기장의 공공 지역으로 돌아가는 지점까지) 내에서 대회 판정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판정은 일반적으로 판정 역할을 하지 않지만,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다른 심판위원에게 배정된 심판 업무를 할 수 있다. 심판장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KAF 대회 규칙의 적용에 대한 모든 심판위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심판장은 기술 감독관과 함께 이의 심의 심판진의 구성원이다. <u>심판장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u> 심판장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장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종목심판장이 심판장 업무를 대신한다.</p> <p>E)~F) “현행과 같음”</p> | |
| <p>3.1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u>개별종목 또는 볼더-리드 종목으로 구성하여 열린다.</u></p> <p>A) 리드: 선수는 <u>1개 또는 2개 루트에서 등반한 거리(높이)로 순위가 결정된다.</u></p> <p>B)~C) “생략”</p> | <p>3.1 <u>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열린다.</u></p> <p>A) 리드: 선수는 <u>등반한 거리(높이)로 순위가 결정된다.</u></p> <p>B)~C) “현행과 같음”</p> | <p>■ 국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p> |
| <p>3.14 선수가 사용하는 기술 장비는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p> <p>A) 선수는 다음을 착용해야 한다.</p> <p>1)~2) “생략”</p> <p><u><신설></u></p> | <p>3.14 선수가 사용하는 기술 장비는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p> <p>A) 선수는 다음을 착용해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u>3) 선수는 루트관찰, 시상식에는 팀복 또는 경기복을 착용해야 하며 오픈된 신발을(슬리퍼, 샌들) 착용 할 수 없다.</u></p> | <p>■ 국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B)~D) “생략”</p> <p>3.16 선수와 팀 임원은 공식적인 개폐 회식과 회의(인터뷰, KAF 혹은 대회 조직위가 기획한 기자회견을 포함)에 참석할 때 팀의 대표로서 소매의 윗부분에 다음이 포함된 팀복을 입어야 한다. ※ 전국체전에서는 반드시 착용<u>한다</u>.</p> <p>A) 시도연맹의 명칭 B) 시도연맹의 로고 (예, 대산련 로고) C) <u>팀 로고</u></p> | <p>B)~D) “현행과 같음”</p> <p>3.16 선수와 팀 임원은 공식적인 개폐 회식과 회의(인터뷰, KAF 혹은 대회 조직위가 기획한 기자회견을 포함)에 참석할 때 팀의 대표로서 소매의 윗부분에 다음이 포함된 팀복을 입어야 한다. ※ 전국체전에서는 반드시 착용<u>하며 위 반시 경고 카드가 발행된다</u>.</p> <p>A) 시도연맹의 명칭 B) 시도연맹의 로고 (예, 대산련 로고) C) <u>A) B) 중 반드시 1개 이상은 표기 되어야 한다</u>.</p> | <p>■ 문 구 추 가 및 현실성 반영</p> |
| <p>3.17 팀의 대표로서 선수는 등반할 때 다음이 포함된 <u>팀복</u>을 입는다.</p> <p>A) 디자인/색상을 유사하게 하여 구별되는 팀복 상의(길거나 짧은 소매일 수 있음)가 있어야 한다. 상의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시도연맹의 로고 2) <u>미적용</u></p> <p>3) <u>대조적인 색으로 된 상의의 뒷면 혹은 옆면에 시도연맹의 명칭</u></p> <p>B) “생략”</p> | <p>3.17 팀의 대표로서 선수는 등반할 때 다음이 포함된 <u>경기복</u>을 입는다.</p> <p>A) 디자인/색상을 유사하게 하여 구별되는 팀복 상의(길거나 짧은 소매일 수 있음)가 있어야 한다. 상의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시도연맹의 로고 2) <u>상의의 뒷면 혹은 옆면 등에 시도연맹의 명칭</u> 3) <u>1) 2) 중 반드시 1개 이상은 표기 되어야 하며 최소 크기는 50cm²이상이 되어야 한다</u>.</p> <p>B) “현행과 같음”</p> | <p>■ 경기복 규 정 정리(사이즈 확정)</p> |
| <p>3.18 선수의 모든 장비와 의류는 다음의 광고 규정에 따라야 한다.</p> <p>A) 헬멧: 제조사가 제작 시 부착한 제조사의 명칭과 <u>기본 사항만</u> 가능 B) “생략” C) 초크백: <u>제조사가 제작 시 부착한 제조사의 명칭과 로고, 기본 사항만 가능하며, 스폰서 및 상업적 광고 불가</u> D) 신발과 양말: <u>제조사가 제작 시 부착한 제조사의 명칭과 로고, 기본 사항만 가능하며, 스폰서 및 상업적 광고 불가</u> E) “생략”</p> | <p>3.18 선수의 모든 장비와 의류는 다음의 광고 규정에 따라야 한다.</p> <p>A) 헬멧: 제조사가 제작 시 부착한 제조사의 명칭과 <u>로고만</u> 가능 B) “현행과 같음” C) 초크백, <u>하네스: 제조사가 제작시 부착한 제조사의 명칭과 로고만 가능</u> D) 신발과 양말: <u>제조사가 제작시 부착한 제조사의 명칭과 로고만 가능</u> E) “현행과 같음”</p> | <p>■ 용 어 정 리 및 불필요 문 구 삭제</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기권</p> <p>3.23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의료적 사고 또는 비의료적 사고로 인하여 경기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1의 기권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의 서명을 받아 대회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A) 선수 본인 B) 시도연맹 감독 C) 대회 심판장</p> <p>※ 시도연맹의 감독이 없는 경우 대회 기술감독관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p> | <p><u><삭제></u></p> | |
| <p>4.5 옐로카드를 받은 팀 임원은 <u>관련 경기 기간 팀 임원의 편의를 위해 경기 지역 내에 지정된 지역</u></p> <p>(※감독/코치존: 심판석 뒤, 심판석과 가까운 곳에 위치)에 출입할 수 없다.</p> | <p>4.5 옐로카드를 받은 팀 임원은 <u>대회가 끝날 때까지 경기지역에 출입할 수 없다.</u></p> <p>(※감독/코치존: 심판석 뒤, 심판석과 가까운 곳에 위치)에 출입할 수 없다.</p> | <p>■ 국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p> |
| <p>4.11 <u>같은 연도에 같은 사람이 3장의 옐로카드를 받으면 해당 사람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된다.</u></p> <p><u>A) 다음 대회에 이미 등록한 사람의 경우, 다음의 관련 종목의 등록이 취소된다.</u></p> <p><u>1) 코리안 컵의 경우 세 번째 경고를 받은 종목</u> <u>2) 불더-리드 종목</u></p> <p><u>B) A)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회의 등록 가능한 임원의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 관련 시도연맹에 대한 등록 정원은 그에 따라 축소된다.</u></p> <p><u>1) 코리안 컵</u> <u>2) 불더-리드 대회</u></p> | <p>4.11 <u>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의 4.4 A) 및 행위 실격(DQS:4.9)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며 추가 제제가 주어진다.</u></p> <p><u>A) 경고 및 실격은 발행시점으로 1년간 누적 관리된다.</u> <u>B) 발행된 징계는 아래 사항에 따라 다음경기에 참가 할수 없다.</u></p> <p><u>1) 발행된 징계가 실격일때 다음 대산련 주관 주최대회에 1회 출전이 금지된다.</u> <u>※ 실격은 경고 2회와 같은 의미로 간주한다.</u></p> <p><u>2) 누적된 경고가 2회는 다음 대산련 주관 주최대회에 1회 출전이 금지된다.</u> <u>3) 누적된 경고가 3회 이상 일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u></p> | <p>■ 연속된 징계조치에 대한 현실화 및 강화</p> |
| <p>6.1 판정과 성적 또는 선수에 관련된 모든 이의제기나 이의 신청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u>스포츠 기술</u> 규정 위반 <u>협</u></p> | <p>6.1 판정과 성적 또는 선수에 관련된 모든 이의제기나 이의 신청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규정 위반 <u>행위</u>에 관하여</p> | <p>■ 용어정리</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u>의</u>에 관하여 이의 심의 심판진이 결정한다. 이의 심의 심판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A)~B) “생략”</p> | <p>이의 심의 심판진이 결정한다. 이의 심의 심판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p> <p>A)~B) “현행과 같음”</p> | |
| <p>7.1 리드 경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p> <p>A) 최소 높이가 15미터이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루트의 설치가 가능한 목적에 맞게 설계된 인공 등반 벽에서 열린다.</p> <p>1) 루트 길이가 최소 15m</p> <p>2)~3) “생략”</p> <p>B) 선수는 아래에서 확보되어 등반하며, 다음 중 하나이다.</p> <p>1) 오픈 스포츠 클래스의 경우, 단일 로프로 루트를 따라 일련의 확보 지점에 클립 하여 확보된다.</p> <p>2) “생략”</p> | <p>7.1 리드 경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p> <p>A) 최소 높이가 15미터이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루트의 설치가 가능한 목적에 맞게 설계된 인공 등반 벽에서 열린다.</p> <p>1) 루트 길이가 최소 15m, <u>폭이 최소 3m가 되어야 한다. 다만 루트 길이와 폭은 경기장 여건에 따라 조직위가 변경할 수 있다.</u></p> <p>2)~3) “현행과 같음”</p> <p>B) 선수는 아래에서 확보되어 등반하며, 다음 중 하나이다.</p> <p>1) 단일로프로 루트를 따라 일련의 확보 지점에 클립 하여 확보된다.</p> <p>2) “현행과 같음”</p> | <p>■ 리드경기벽에 대한 내용 명확화</p> |
| <p>7.5 각 등반로프는 1명의 확보자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며, 보조자의 도움을 권장한다.</p> <p>확보자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p> <p>A) “생략”</p> <p>B) 확보자는 선수가 루트를 시도하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p> <p>1) “생략”</p> <p>2) 로프는 루트를 시도할 때 다음을 사용하여 선수의 안전벨트에 연결되었는지</p> <p>a) <u>루트 상단의 앵커에 로프를 통과시키지 않고</u> “8자 매듭”과 “안전매듭”으로 연결</p> <p>b) <u>루트 상단의 앵커에 로프를 통과시키고</u> 8자 매듭을 하고 안전 매듭이나 테이프로 백업하여 2개의 잠금비너 또는 자동 잠금 카라비너의 게이트를 서로</p> | <p>7.5 각 등반로프는 1명의 확보자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며, 보조자의 도움을 권장한다.</p> <p>확보자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p> <p>A) “현행과 같음”</p> <p>B) 확보자는 선수가 루트를 시도하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로프는 루트를 시도할 때 다음을 사용하여 선수의 안전벨트에 연결되었는지</p> <p>a) <u>리딩방식으로 등반시</u> “8자 매듭”과 “안전매듭”으로 연결</p> <p>b) <u>탑로핑 방식으로 등반시</u> 8자 매듭을 하고 안전 매듭이나 테이프로 백업하여 2개의 잠금비너 또는 자동 잠금 카라비너의 게이트를 서로 반대로 위치</p> | <p>■ 용어 정리 및 명확화</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 | | | | |
|--|---|-----------------|------------|-----|-------|-------|-----|----|-------|--|-----------------------|
| <p>로 반대로 위치하여 연결</p> <p>3) “생략”</p> | <p>하여 연결</p> <p>3) “현행과 같음”</p> | | | | | | | | | | |
| <p>7.7 예선전 이후의 각 라운드의 정원은 해당 라운드의 공식 결과가 결정되고 이의 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이전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순위를 기록한 선수들로 채워진다.</p> <p>동률인 선수들로 인해 관련 라운드의 정원을 초과하면 동률인 선수 모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p> <p>A) <u>준결승 라운드 정원은 관련 스포츠 클래스 부문에 등록된 선수의 수로 정한다.</u></p> <table border="1" data-bbox="135 875 667 1048"> <thead> <tr> <th>등록선수</th> <th>오픈 스포츠 클래스</th> <th>파라 스포츠 클래스</th> </tr> </thead> <tbody> <tr> <td>≤24</td> <td>해당 없음</td> <td>해당 없음</td> </tr> <tr> <td>>24</td> <td>24</td> <td>해당 없음</td> </tr> </tbody> </table> <p><u>만약에 어떤 부문에서 출전그룹이 두 개였다면, 다음 라운드의 정원은 두 그룹에 균등하게 나누어서 적용된다. (예: 오픈 스포츠 클래스의 준결승 라운드는 각 그룹당 13명)</u></p> <p>B) “생략”</p> | 등록선수 | 오픈 스포츠 클래스 | 파라 스포츠 클래스 | ≤24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24 | 24 | 해당 없음 | <p>7.7 예선전 이후의 각 라운드의 정원은 해당 라운드의 공식 결과가 결정되고 이의 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이전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순위를 기록한 선수들로 채워진다.</p> <p>동률인 선수들로 인해 관련 라운드의 정원을 초과하면 동률인 선수 모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p> <p>A) <u>준결승 라운드 정원은 24명이다. 만약에 어떤 부문에서 출전그룹이 두 개였다면, 다음 라운드의 정원은 두 그룹에 균등하게 나누어서 적용된다. (예: 준결승 라운드는 각 그룹당 12명)</u></p> <p>B) “현행과 같음”</p> | <p>■ 국내 기준에 맞춘 변경</p> |
| 등록선수 | 오픈 스포츠 클래스 | 파라 스포츠 클래스 | | | | | | | | | |
| ≤24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 | | | | |
| >24 | 24 | 해당 없음 | | | | | | | | | |
| <p>7.10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시간 차이가 있어야 한다.</p> <p>(주) <u>심판장</u>의 재량으로 아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A)~B) “생략”</p> | <p>7.10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시간 차이가 있어야 한다.</p> <p>(주) <u>조직위</u>의 재량으로 아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A)~B) “현행과 같음”</p> | <p>■ 업무 명확화</p> | | | | | | | | | |
| <p>7.17 선수의 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p>A) 선수의 몸 전체가 지면에서 떠났을 때 등반 시간(그리고 등반허용 시간) 측정이 시작되고 선수의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루트심판은 선수가 출발하는지 또는 시작 전에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선수는 등반</p> | <p>7.17 선수의 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p>A) 선수의 몸 전체가 지면에서 떠났을 때 등반 시간(그리고 등반허용 시간) 측정이 시작되고 선수의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루트심판은 선수가 출발하는지 또는 시작 전에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선수는 등반</p> | | | | | | | | |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중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a)~b) “생략”</p> <p>B) “생략”</p> | <p>중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 <u>만약 선수가 하향 등반을 하지 않고 Z-클립을 해결할 수 없는 위치까지 전진할 경우 심판은 등반 종료를 선언하고 이 선수의 성적은 하향 등반을 하지 않고 Z-클립을 해결할 수 있는 홀드의 통계까지이다.</u></p> <p>3) <u>시도 중에 진행되었던 이전의 퀵드로우가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이 풀릴 경우 이 선수의 시도는 종료되고 이 시도에서 성적은 풀린 퀵드로우를 클립하기 위해 도달한 홀드의 통계까지이다.</u></p> <p>★ <u>심판은 확실한 증거의 확인을 위하여 상황이 발생 시 안전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선수의 시도는 계속 진행되고 해당 선수의 시도 종료 시 해당 퀵드로우의 클립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u></p> <p>a)~b) “현행과 같음”</p> <p>B) “현행과 같음”</p> | <p>■ 국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p> |
| <p>7.24 준결승과 결승 라운드 순위</p> <p>A)~B) “생략”</p> <p>C) 결승 라운드에 관련하여, 7.22항의 순위 절차에 따라 동률일 경우, 관련 선수들의 순위는 다음의 절차로 결정한다.</p> <p>1) “생략”</p> <p>2) <u>카운트백을 적용한 후에도 1위, 2위 또는 3위와 관련 선수들이 동률인 경우, 해당 선수들의 순위는 이 선수들의 등반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짧은 시간이 우선순위)</u></p> <p>※ <u>1위 2위 3위를 제외한 다른 순위와 관련된 동률이라면, 이와 관련된 선수들에게는 같은 순위가 부여된다. ★</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7.24 준결승과 결승 라운드 순위</p> <p>A)~B) “현행과 같음”</p> <p>C) 결승 라운드에 관련하여, 7.22항의 순위 절차에 따라 동률일 경우, 관련 선수들의 순위는 다음의 절차로 결정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카운트백을 적용 하고도 동순위일 때는 동률로 한다.</u></p> <p>3) <u>반드시 순위를 결정해야 할 경우 카운트백을 적용한 후에도 선수들이 동</u></p> | <p>■ 국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p> <p>■ 국내 실정 반영</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p><u>틀린 경우, 해당 선수들의 순위는 이 선수들의 등반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u> (짧은 시간이 우선순위)★</p> | |
| <p>8.6 예선전 이후의 각 라운드의 정원은 해당 라운드의 공식 결과가 결정되고 이의 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이전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순위를 기록한 선수들로 채워진다. 만약 동률에 의해 정원이 초과된다면, 해당하는 모든 동률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자격을 얻는다.</p> <p>A)~B) “생략”</p> <p>※ 특수한 경우 <u>심판장</u>의 재량으로 경기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p> | <p>8.6 예선전 이후의 각 라운드의 정원은 해당 라운드의 공식 결과가 결정되고 이의 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이전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순위를 기록한 선수들로 채워진다. 만약 동률에 의해 정원이 초과된다면, 해당하는 모든 동률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자격을 얻는다.</p> <p>A)~B) “현행과 같음”</p> <p>※ 특수한 경우 <u>조직위</u>의 재량으로 경기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p> | <p>■ 업무 명확화</p> |
| <p>8.8 <u>볼더링 경기의 모든 라운드는 격리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경기의 어떤 라운드에서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해당 라운드의 공식 출전순서표에 명시된 시간까지 격리구역에 입실해야 하며, 격리구역에서 입실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격리구역에 머무르지 않으면 해당 라운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8.8 <u>볼더경기는 다음의 형태로 경기를 진행한다.</u></p> <p>A) 일반적으로 볼더링 경기의 모든 라운드는 격리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경기의 어떤 라운드에서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해당 라운드의 공식 출전순서표에 명시된 시간까지 격리구역에 입실해야 하며, 격리구역에서 입실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격리구역에 머무르지 않으면 해당 라운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p> <p>B) 청소년(유스) 대회는 조직위의 결정에 따라 예선경기를 오픈경기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p> <p>1) <u>시등 영상의 제공 또는 시범등반을 한다.</u></p> <p>a) <u>예정된 라운드의 시작 12시간 전에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업</u></p> | <p>■ 국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p> <p>■ 청소년 볼더 오픈방식 추가</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 | | | | | |
|---|--|--------------------|-------|-----------------|-------|-------|----|-------|------------|------|-----------------|--|
| | <p><u>로드 한다.</u></p> <p>b) <u>영상이 불가능한 경우 첫 번째 선수가 시도하기 30분 전에 시범등반을 해야 한다.</u></p> <table border="1" data-bbox="703 427 1238 622"> <thead> <tr> <th>구분</th> <th>볼더의 수</th> <th>방식</th> <th>등반 시간</th> <th>출전 순서</th> </tr> </thead> <tbody> <tr> <td>예선</td> <td>4 - 6</td> <td>오픈/ 플래시</td> <td>4-5분</td> <td>무작위 /오프 셋</td> </tr> </tbody> </table> <p>2) <u>경기는 아래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u></p> <p><u>※오프셋(Offset Order) : 각 코스 또는 볼더의 출전순서가 다른 코스 또는 볼더의 출전순서로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볼더 수에 비례한다.</u></p> <p><u>(예: 40명의 선수가 참가할 경우 4개의 볼더 선수 10명씩 배분하여 40분 주기로 코스를 이동 하면서 등반한다.)</u></p> | 구분 | 볼더의 수 | 방식 | 등반 시간 | 출전 순서 | 예선 | 4 - 6 | 오픈/ 플래시 | 4-5분 | 무작위 /오프 셋 | |
| 구분 | 볼더의 수 | 방식 | 등반 시간 | 출전 순서 | | | | | | | | |
| 예선 | 4 - 6 | 오픈/ 플래시 | 4-5분 | 무작위 /오프 셋 | | | | | | | | |
| <p>8.9 동일한 날에 연속적으로 라운드를 진행할 경우, 첫 번째 라운드 마지막 선수의 시도가 끝난 시간과 다음 라운드의 격리구역의 폐쇄 시간까지 최소 2시간의 시간 차이가 있어야 한다.</p> <p>(주) <u>심판장</u> 재량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p> | <p>8.9 동일한 날에 연속적으로 라운드를 진행할 경우, 첫 번째 라운드 마지막 선수의 시도가 끝난 시간과 다음 라운드의 격리구역의 폐쇄 시간까지 최소 2시간의 시간 차이가 있어야 한다.</p> <p>(주) <u>조직위</u> 재량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p> | <p>■ 업무 명확화</p> | | | | | | | | | | |
| <p>8.13 A) “생략”</p> <p>B) 결승 라운드의 등반 시간 4분이고, 별도의 준비시간은 없다.</p> <p><u>(주) 심판장 재량으로 등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최소 4분 적용)★</u></p> | <p>8.13 A) “현행과 같음”</p> <p>B) 결승 라운드의 등반 시간 4분이고, 별도의 준비시간은 없다.</p> <p><u>(주) 심판장 재량으로 등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최소 4분 적용)★</u></p> | <p>■ 최소등반시간 삭제</p> | | | | | | | | | | |
| <p>8.16 각 볼더는 최소한 1명의 2급 이상의 심판이 판정하며, 심판은 다음을 기록한다.</p> <p>A) 각 선수가 시도한 횟수. 선수가 다음을 할 때마다 시도 횟수를 더한다.</p> <p>1) “생략”</p> <p>2) <u>출발하기 전에, 다음 이외의 다른</u></p> | <p>8.16 각 볼더는 최소한 1명의 2급 이상의 심판이 판정하며, 심판은 다음을 기록한다.</p> <p>A) 각 선수가 시도한 횟수. 선수가 다음을 할 때마다 시도 횟수를 더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출발하기 전에, 출발 홀드 이외의</u></p> | <p>■ 국제 규정</p> | | | | | | | | |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u>홀드 또는 구성물을 터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u></p> <p>a) <u>출발 홀드 또는</u></p> <p>b) <u>출발 홀드의 사용 가능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고정되거나 배치된 모든 인공홀드 또는 구성물(블로커 홀드)</u></p> <p>3) “생략”</p> <p>B) “생략”</p> | <p><u>다른 홀드 터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u></p> <p><u>※ 블로커 홀드는 터치는 가능 하지만 통제(사용)시 시도가 추가 된다.</u></p> <p>3) “현행과 같음”</p> <p>B) “현행과 같음”</p> | <p>개정에 따른 개정</p> |
| <p>8.18 선수들의 출발은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p> <p>A) “생략”</p> <p>B) 잘못된 출발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8.18 선수들의 출발은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p> <p>A) “현행과 같음”</p> <p>B) 잘못된 출발은 다음과 같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u>블로커 홀드를 통제할 경우</u></p> | <p>■ 국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p> |
| <p>9.1 스피드</p> <p>A) 스피드 경기는 다음의 요구를 충족하여 개최하여야 한다.</p> <p>1) <u>IFSC</u> 스피드 라이선스 규정이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되고 <u>IFSC</u> 또는/그리고 대산련 승인한 인공구조물에서 개최해야 한다.</p> <p>2) <u>IFSC</u> 또는 대산련이 승인한 전자 계측시스템을 사용하여 개최해야 한다.</p> <p>3) <u>IFSC</u> 또는 대산련이 승인한 자동 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선수를 위에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최해야 한다.</p> <p>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은 두 명의 확보자가 로프를 제어하는 톱로핑 방식을 승인할 수 있다.</p> | <p>9.1 스피드</p> <p>A) 스피드 경기는 다음의 요구를 충족하여 개최하여야 한다.</p> <p>1) <u>WORLD CLIMBING</u> 스피드 라이선스 규정이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되고 <u>WORLD CLIMBING</u> 또는/그리고 대산련 승인한 인공구조물에서 개최해야 한다.</p> <p>2) <u>WORLD CLIMBING</u> 또는 대산련이 승인한 전자 계측시스템을 사용하여 개최해야 한다.</p> <p>3) <u>WORLD CLIMBING</u> 또는 대산련이 승인한 자동 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선수를 위에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최해야 한다.</p> <p>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은 두 명의 확보자가 로프를 제어하는 톱로핑 방식을 승인할 수 있다.</p> | <p>■ 국제 연맹 명칭 변경</p> |
| <p>9.3 국내 기록은 경기 중 만들어진 기록만 인정(즉 연습 기간이나 경기 중이 아닌: 포기 또는 취소된 레이스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되며 다음의 조건을 따른다.</p> <p>A) 국내 기록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u>IFSC</u> 및 대산련에 의해 인증된 등</p> | <p>9.3 국내 기록은 경기 중 만들어진 기록만 인정(즉 연습 기간이나 경기 중이 아닌: 포기 또는 취소된 레이스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되며 다음의 조건을 따른다.</p> <p>A) 국내 기록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u>WORLD CLIMBING</u> 및 대산련에</p> | <p>■ 국제 연맹</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반벽, 홀드, 계측시스템, 오토빌레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B)~D) “생략”</p> | <p>의해 인증된 등반벽, 홀드, 계측시스템, 오토빌레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B)~D) “생략”</p> | <p>명칭 변경</p> |
| <p>9.14 부정 출발 A) 어떤 레이스든, 출발지시자가 ‘준비’ 라고 선언한 후에 1)~2) “생략” B) <u>부정 출발 발생시 계측시스템의 리콜신호와 함께, 출발지시자는 가능한 빨리 ‘STOP(등반 중지)’ 를 선언해야 한다.</u></p> <p>C) IFSC 또는 대산련이 승인한 전자 계측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반응시간의 유효성은 절대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u><신설></u></p> | <p>9.14 부정 출발 A) <u>예선전에서의</u> 어떤 레이스든, 출발지시자가 ‘준비’ 라고 선언한 후에 1)~2) “현행과 같음” B) <u>결승 레이스에서, 출발지시자가 ‘준비’ 라고 선언한 후에</u> 1) <u>한 선수가 0.1초 미만의 반응시간을 가지면, 관련 선수는 부정 출발한 것으로 기록된다.</u> 2) <u>두 선수가 0.1초 미만의 반응시간을 가지면,</u> a) <u>두 선수의 반응시간과 관계없이 부정 출발은 기록되지 않으며 관련 레이스는 재등반한다.</u> C) <u>부정 출발 발생시 계측시스템의 리콜신호와 함께, 출발지시자는 가능한 빨리 ‘STOP(등반 중지)’ 를 선언해야 한다.</u> D) <u>WORLD CLIMBING 또는 대산련이 승인한 전자 계측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반응시간의 유효성은 절대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u></p> | <p>■ 국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p> |
| <p>9.15 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A) “생략” B)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련 선수의 결과는 “추락(Fall)” 로 기록된다. 1) “생략” 2) <u>추락(또는 미끄러진)한 홀드보다 더 낮은 위치에 선수가 있을 때</u> 3)~4) “생략”</p> | <p>9.15 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A) “현행과 같음” B)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련 선수의 결과는 “추락(Fall)” 로 기록된다. 1) “현행과 같음” 2) <u>추락은 두 손이 홀더를 모두 놓친 상황에서 오토빌레이/로프에 하중이 실릴 때 추락으로 판정한다.</u> 3)~4) “현행과 같음”</p> | <p>■ 국제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p> |
| <p>9.16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는 루트의 시도 사이에 최소 휴식 시간은 5분이다.</p> | <p>9.16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는 루트의 시도 사이에 최소 휴식 시간은 5분이다.</p>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A) <u>9.9(B)(2)(c)</u> 에 따라 동물을 가리는 경기가 개최되는 경우 또는 B) <u>9.12(A)</u> 에 따라 부정 출발이 발생한 후 | A) <u>9.11(B)(2)(c)</u> 에 따라 동물을 가리는 경기가 개최되는 경우 또는 B) <u>9.14(A)</u> 에 따라 부정 출발이 발생한 후 | ■ 관련 규정 명확화 |
| 9.19 결승 순위 A) “생략” B) 결승 라운드의 각 단계에서 경기를 마친 선수는 다음의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진다. 1)~2) “생략” 3) 위 A) 항보다 상위로, 모든 선수는 <u>9.9B) 1) 또는 9.9B) 3)</u> 에 따라 레이스의 패자로 간주한다. | 9.19 결승 순위 A) “현행과 같음” B) 결승 라운드의 각 단계에서 경기를 마친 선수는 다음의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진다. 1)~2) “현행과 같음” 3) 위 A) 항보다 상위로, 모든 선수는 <u>9.11B) 1) 또는 9.11B) 3)</u> 에 따라 레이스의 패자로 간주한다. | ■ 관련 규정 명확화 |
| 9.20 종합순위 종합순위는 본 규정 4.10 항과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A)~B) “생략” | 9.20 종합순위 종합순위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A)~B) “현행과 같음” | ■ 문구 명확화 |
| 별첨 ※ 스피드 국내 기록 관리 규정 1) 대산련 스피드 공인기록 관리 규정 -. 반드시 <u>IFSC가</u> 승인한 전문시공업체가 시공한 벽이어야 한다. -. 위원회 시설물 승인 벽에서의 기록만 인증한다(시설물 인정 및 1회 용대회 승인 포함) 대회전 시설물 적격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위원회 시설물 승인 후 4년 주기로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4년부터 적용) -. 대산련 주관대회 또는 감독관파견이 되는 대회 -. 계측기는 대산련이 보유 중인 계측기로 한다. (국제공인 계측기는 사용할 수 있다) -. 한 대회에서 신기록 2번 이상 갱신 시 최고 기록 1개만 공인기록으로 인증한다. | 별첨 ※ 스피드 국내 기록 관리 규정 1) 대산련 스피드 공인기록 관리 규정 -. 반드시 <u>WORLD CLIMBING이</u> 승인한 전문시공업체가 시공한 벽이어야 한다. -. 위원회 시설물 승인 벽에서의 기록만 인증한다(시설물 인정 및 1회 용대회 승인 포함) 대회전 시설물 적격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위원회 시설물 승인 후 4년 주기로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4년부터 적용) -. 대산련 주관대회 또는 감독관파견이 되는 대회 -. 계측기는 대산련이 보유 중인 계측기로 한다. (국제공인 계측기는 사용할 수 있다) -. 한 대회에서 신기록 2번 이상 갱신 시 최고 기록 1개만 공인기록으로 인증한다. | ■ 국제연맹 명칭 변경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 각종 국제 대회에서(IFSC) 수립한 기록도 인증한다.</p> <p>- 위와 규정에 없는 내용은 IFSC 스피드 규정에 따른다.</p> <p>- 국내 스피드 신기록은 클라이밍 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하여 그 기록이 인증된다.</p> <p>2) 상기 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록을 공식 기록으로 인증한다.</p> <p>남자기록 1~15. “생략” <u><신설></u></p> <p>여자기록 1~9. “생략” <u><신설></u></p> | <p>- 각종 국제 대회에서(WORLD CLIMBING) 수립한 기록도 인증한다.</p> <p>- 위와 규정에 없는 내용은 WORLD CLIMBING 스피드 규정에 따른다.</p> <p>- 국내 스피드 신기록은 클라이밍 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하여 그 기록이 인증된다.</p> <p>2) 상기 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록을 공식 기록으로 인증한다.</p> <p>남자기록 1~15. “현행과 같음” <u>16. 2024년 중국 올림픽 예선전 - 상하이 5/18 (5.09초: 신은철)</u> <u>17. 2025년 전국체전 - 부산 10/17 (5.08초: 신은철)</u></p> <p>여자기록 1~9. “현행과 같음” <u>10. 2024년 중국 월드컵 - 우장 4/13(6.62초: 정지민)</u> <u>11. 2025년 중국 월드컵 - 우장 4/26(6.337초: 정지민)</u></p> | <p>■ 신기록 추가</p> |
| <p>10. 팀 스피드</p> <p>IFSC는 팀 속도 경기에 IFSC 규정 2018(v1.5)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9장, 10장</p> | <p>10. 팀 스피드</p> <p>WORLD CLIMBING은 팀 속도 경기에 WORLD CLIMBING 규정 2018(v1.5)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9장, 10장</p> | <p>■ 국제연맹 명칭 변경</p> |
| <p>10.3.2 등반 시간은 IFSC/대산련이 승인한 전자 계측시스템을 사용하여 측정한다.</p> | <p>10.3.2 등반 시간은 WORLD CLIMBING/대산련이 승인한 전자 계측시스템을 사용하여 측정한다.</p> | <p>■ 국제연맹 명칭 변경</p> |
| <p>11. 볼더리드</p> | <p>11. 볼더리드 <삭제 26.00.00.></p> | <p>■ 국제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p> |
| <p>[별첨 1] IFSC 부적격표</p> | <p>[별첨 1] WORLD CLIMBING 부적격표</p> | <p>■ 국제연맹 명칭 변경</p> |
| <p><u><신설></u></p> | <p><u>부칙 (2020.08.18.)</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u></p> | <p>■ 부칙 명시 (스공위 권고 사항)</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 align="center"><u><신설></u></p> | <p align="center"><u>부 칙 (2021.06.12.)</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u></p> | <p>■ 부 칙 명 시 (스공위 권고 사항)</p> |
| <p align="center"><u><신설></u></p> | <p align="center"><u>부 칙 (2022.06.24.)</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u></p> | <p>■ 부 칙 명 시 (스공위 권고 사항)</p> |
| <p align="center"><u><신설></u></p> | <p align="center"><u>부 칙 (2023.06.22.)</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u></p> | <p>■ 부 칙 명 시 (스공위 권고 사항)</p> |
| <p align="center"><u><신설></u></p> | <p align="center"><u>부 칙 (2024.03.20.)</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u></p> | <p>■ 부 칙 명 시 (스공위 권고 사항)</p> |
| <p align="center"><u><신설></u></p> | <p align="center"><u>부 칙 (2025.07.04.)</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u></p> | <p>■ 부 칙 명 시 (스공위 권고 사항)</p> |
| <p align="center"><u><신설></u></p> | <p align="center"><u>부 칙 (2026.00.00.)</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u></p> | |
| <p>[별지1] 기관신청서</p> | <p><u><삭제 26.00.00.></u></p> | |

[전문 참조]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제5조(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수립 및 정보공개) ① 연맹은 매년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p> <p>1. 체육인 인권보호 기본방향</p> <p>2. 체육인 인권보호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p> <p>3. 타 기관과의 협력사항</p> <p>4. 그 밖에 인권보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연맹은 인권보호 계획 및 그 이행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연맹 관계단체는 이 규정 및 연맹 인권보호 계획을 준용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연맹은 제4항에 따른 연맹 관계단체의 인권보호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맹 관계단체에 인센티브 및 포상을 수여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 <p><u>제5조(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수립 및 정보공개) <삭제 2026.00.00.></u></p> | <p>■ 위원회 폐지</p> |
| <p>제16조(위원회 설치) 연맹은 체육인 인권보호에 관한 자문을 위해 체육인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 <p><u>제16조(위원회 설치) <삭제 2026.00.00.></u></p> | <p>■ 위원회 폐지</p> |
| <p>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 <p>1.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수립</p> <p>2.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대한체육회장 또는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p> | <p><u>제17조(위원회 기능) <삭제 2026.00.00.></u></p> | <p>■ 체육인인권위원회 → 인권경영위원회 흡수·통합</p> |
| <p>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 <p><u>제18조(위원회 구성) <삭제 2026.00.00.></u></p> | <p>■ 체육인인권위원회 → 인</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u>1. 위원장 1명</u> <u>2. 부위원장 3명</u> <u>3. 위원 15명 이하(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u> <u>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연맹 회장이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u> <u>③ 위원은 인권전문가, 법률가, 선수 출신자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연맹 회장이 위촉한다.</u> <u>④ 연맹 정관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u> <u>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을 수 없다.</u></p> | | <p>권경영위원회 흡수·통합</p> |
| <p><u>제19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 <p><u>제19조(위원회 운영 등)</u> <u><삭제 2026.00.00.></u></p> | <p>■ 체육인인권위원회 → 인권경영위원회 흡수·통합</p> |
| | <p><u>부 칙(2026.00.00.)</u> <u>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u></p> | |

1-10 사무처 규정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제3조(채용) 직원의 <u>채용은 고시로써 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상 고시 선발이 부적합할 때는 전형으로 할 수 있다.</u></p> | <p>제3조(공개채용) 직원의 <u>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u></p> | <p>■ 관련 법률 준용</p> |
| <p>제5조 (구비서류) ① 직원을 <u>채용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서 (본 연맹 소정양식)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주민등록 <u>등본</u> 6. 경력증명서 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8. 기타 연맹이 필요로 하는 서류 <p>② “생략”</p> | <p>제5조 (구비서류) ① 직원의 <u>신규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원서</u> (본 연맹 소정양식)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주민등록 <u>초본(병역사항 포함)</u> 6. 경력증명서 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8. 기타 연맹이 필요로 하는 서류 <p>② “현행과 같음”</p> | <p>■ 관련 법률 준용</p> |
| <p>제6조(자격제한) 사무처 직원 채용에 있어 <u>자격제한은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u></p> | <p>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u> 2.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3. <u>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4. <u>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u> 5. <u>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u> 6. <u>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 <p>■ 관련 법률 준용</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p><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u>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u> <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u>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u> <u>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u> <u>면직자 등의 취업제한</u> <u>사유에 해당하는 사람</u></p> <p><u>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u> <u>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u> <u>지 5년이 지나지 아니</u> <u>한 사람</u></p> <p><u>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u> <u>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u> <u>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u> <u>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u> <u>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u> <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p> <p>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p> <p><u>12.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u> <u>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u> <u>금고 이상의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u> <u>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u> <u>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u>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u> <u>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u> <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p> <p>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p> | |
| <p>제12조(기구) ① “생략”</p> <p>② 회장은 사무 형편상 필요에 따라 아 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처 기구를 신</p> | <p>제12조(기구) ① “현행과 같음”</p> <p>② 회장은 사무 형편상 필요에 따라 사 무처 기구를 신설하거나 조정할 수 있</p> | <p>■ 용어정리</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설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p> | <p>다.</p> | |
| <p>제13조(정원) 사무처의 정원은 <u>이사회의 동의를 얻어</u> 회장이 정한다.</p> | <p>제13조(정원) 사무처의 정원은 회장이 정한다.</p> | <p>■ 용어정리</p> |
| <p>제22조(휴일)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주휴일은 매주 <u>토요일</u>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 <p>제22조(휴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주휴일은 매주 <u>일요일</u>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 <p>■ 제19조 근무시간 2항에 토요일 휴무 관련 문구 중복</p> |
| <p>제23조(휴일근무)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p> | <p>제23조(휴일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u>직원 연봉에 의거</u> 수당을 지급하거나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할 수 있다.</p> | <p>■ 수당에 대한 기준 명확화</p> |
| <p>제25조(연차 휴가) ①~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가일수 중 미 사용일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⑤~⑧ “생략”</p> | <p>제25조(연차 휴가)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가일수 중 미 사용일수에 대하여는 <u>직원 연봉에 의거</u>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⑤~⑧ “현행과 같음”</p> | <p>■ 현실반영</p> |
| <p>제29조(특별휴가) ① 직원이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u>받을 수 있다.</u> ②~⑤ “생략”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u>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u>」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u>제21조의 연가일수</u>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⑨ “생략” <u><신설></u></p> | <p>제29조(특별휴가) ① 직원이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와 <u>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u> ②~⑤ “현행과 같음”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u>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u>제25조의 연차일수</u>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⑨ “현행과 같음” <u>⑩ 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 또는 장애인인 자녀(이하 “자녀”라 한다)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u></p> | <p>■ 관련 법률 준용</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p>가 장애인이거나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자녀돌봄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 상담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p>⑪ 근로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1년 중 최대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다.</p> <p>⑫ 회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p>직원: 5일</p> <p>2.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 7일</p> <p>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p> | |
| <p><신설></p> | <p>제29조의1(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회장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p>② 회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p> <p>③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에게는</p> | <p>■ 관련 법률 준용</p>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p><u>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하고 임금을 지급한다.</u></p> <p><u>⑤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u></p> | |
| <p>제30조(보상휴가) ①~② “생략”</p> <p>③ 보상휴가는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보상 휴가 발생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진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p> | <p>제30조(보상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보상휴가는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p> | <p>■ 관련 법률 준용</p> |
| <p>제31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u>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제31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같은 연도 내 제2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u> <u>2. 같은 연도 내 제248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u> <u>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u> <u>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u> | <p>■ 관련 법률 준용</p> |
| <p>제40조(급여구분) 연맹 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봉 2. 각종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업무추진비 나. 기타수당(성과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u>3. 국민연금, 의료보험료,</u> | <p>제40조(급여구분) 연맹 직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봉 2. 각종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업무추진비 나. 기타수당(성과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
| <p>제43조(연봉) 직원의 연봉 및 지급 기준은 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정한다.</p> | <p>제43조(연봉) 직원의 연봉 및 지급 기준은 회장이 정한다.</p>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다.</p> <p>제45조(기타수당) 직원에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기타수당(성과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 <p>제45조(기타수당) 직원에게는 <u>예산범위 내에서</u>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기타수당(성과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 <p>■ 현실반영</p> |
| <p><u><신설></u></p> | <p><u>제9 장 보 칙</u></p> <p>제62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법률에 따른다.</p> | <p>■ 관련 법률 준용</p> |
| <p><u>부 칙 (2010. 11. 27)</u></p> <p>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p><u>부 칙 (2010.11.27.)</u></p> <p>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 |
| <p><u>부 칙 (2013. 3. 30)</u></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30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u>부 칙(2013.12.27.)</u></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 <p><u>부 칙 (2013.03.30.)</u></p> <p>이 규정은 2013년 3월 30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u>부 칙(2013.12.27.)</u></p> <p>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 <p><u>부 칙(2014.8.29.)</u></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 <p><u>부 칙(2014.08.29.)</u></p> <p>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 <p><u>부 칙(2014.12.23.)</u></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 <p><u>부 칙(2014.12.23.)</u></p> <p>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 <p><u>부 칙(2016.12.22.)</u></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 <p><u>부 칙(2016.12.22.)</u></p> <p>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 <p><u>부 칙(2017.03.17.)</u></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 <p><u>부 칙(2017.03.17.)</u></p> <p>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신설></p> | <p><u>부 칙 (2026.00.00.)</u>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별표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p> <table border="1" data-bbox="137 573 665 1274"> <thead> <tr> <th>구 분</th> <th>대 상</th> <th>일 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 혼</td> <td>본 인</td> <td>5</td> </tr> <tr> <td>자 녀</td> <td>1</td> </tr> <tr> <td rowspan="2">출 산</td> <td>배우자</td> <td>5</td> </tr> <tr> <td>(한번의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td> <td>25</td> </tr> <tr> <td>입 양</td> <td>본 인</td> <td>20</td> </tr> <tr> <td rowspan="4">사 망</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5</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 <td>2</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2</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 <td>1</td> </tr> </tbody> </table> <p>비고 : 입양은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p> |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 인 | 5 | 자 녀 | 1 | 출 산 | 배우자 | 5 | (한번의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 25 | 입 양 | 본 인 | 2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p>[별표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p> <table border="1" data-bbox="700 573 1243 1274"> <thead> <tr> <th>구 분</th> <th>대 상</th> <th>일 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 혼</td> <td>본 인</td> <td>5</td> </tr> <tr> <td>자 녀</td> <td>1</td> </tr> <tr> <td rowspan="2">출 산</td> <td>배우자</td> <td>20</td> </tr> <tr> <td>(한번의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td> <td>25</td> </tr> <tr> <td>입 양</td> <td>본 인</td> <td>20</td> </tr> <tr> <td rowspan="4">사 망</td> <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 <td>5</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 <td>3</td> </tr> <tr> <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 <td>3</td> </tr> <tr> <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td> <td>3</td> </tr> </tbody> </table> <p>※ 경조사별 휴가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p> |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 인 | 5 | 자 녀 | 1 | 출 산 | 배우자 | 20 | (한번의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 25 | 입 양 | 본 인 | 20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p>■ 관련 법률 준용</p> |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혼 | 본 인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녀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 산 | 배우자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번의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 양 | 본 인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혼 | 본 인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녀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 산 | 배우자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번의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 양 | 본 인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신설></p> | <p>[별표 2] 경조사비</p> | <p>■ 현실에 맞는 경조사비 신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 | 개정(안) | | | 개정사유 |
|----|-------|------------------|---------|------|
| | 구분 | 대상 | 금액 | |
| | 축의금 | 본인 결혼 | 500,000 | |
| | | 자녀 결혼 | 300,000 | |
| | | 자녀 출산 | 300,000 | |
| | 조의금 | 본인의 부모 | 500,000 | |
| | | 배우자의 부모 | 300,000 | |
| | | 배우자 및 자녀 | 500,000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300,000 | |

1-11 재무·회계 및 계약 규정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연맹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① 연맹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연맹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2. 모든 회계정보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증빙으로 하고 전표에 의한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3. 회계처리기준과 절차는 매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4. 회계처리관정에서 둘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는 체육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p>■ 관련 법률 준용</p> |
| <p>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연맹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연맹의 장이 편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 받은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예산승인 통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p> | <p>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연맹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연맹의 장이 편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 |
| <p>제12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임·직원 보수일람표 | <p>제12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 |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p><u>4. 이사회관계</u> 회의록의 사본</p> <p>제31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u>3. 이사회 관계</u> 회의록의 사본</p> <p>제31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u>연맹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재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대상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u></p> | <p>■ 자구수정</p> <p>■ 관련 법률 준용</p> |
|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0.11.27.)</u></p> <p>제 1 조(시행일) <u>① 이 규정은 이사회(2010.11.27)의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0.11.27.)</u></p> <p><u>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 |
|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0.12.28)</u></p> <p>제 1 조(시행일) <u>① 이 규정은 이사회(2010.12.28)의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0.12.28.)</u></p> <p><u>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 |
|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2.09.01)</u></p> <p>제 1 조(시행일) <u>① 이 규정은 이사회(2012.9.1)의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2.09.01.)</u></p> <p><u>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 |
|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3.03.30)</u></p> <p><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30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u></p> |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3.03.30.)</u></p> <p><u>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 |
|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6.12.22.)</u></p> <p><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6.12.22.)</u></p> <p><u>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 |
|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7.03.17.)</u></p> <p><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7.03.17.)</u></p> <p><u>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 |
|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26.00.00.)</u></p> <p><u>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p> | |

1-12 생활체육 심판 규정 제정(안)

[전문 참조]

1-13 생활체육 대회 규정 제정(안)

[전문 참조]

1-14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제정(안)

[전문 참조]

1-15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전문 참조]